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中 改正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부·법무부 및 산업자원부의 협의를 통해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 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및 第11條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 및 持株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당해 會社의 純資產額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株式에 대한 新株配定 또는 株式配當으로 新株를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2年 이내에 한한다.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3.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民間投資事業을 영위하는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20年 이내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企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改善(이하 “企業構造調整”이라 한다), 外國人 投資의 誘致 또는 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을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5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純資產額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1.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資本總計에서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현재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設立된 會社로서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가 없는 경우에는 設立 당시의 納入資本金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3.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또는 會社設立日 이후에 新株發行, 合併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資本總計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資本總計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 취득 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 다음 各號의 1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 ⑤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① 大規模企業集團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特殊關係人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特殊關係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大規模內部去來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產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②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 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證券去來法 第186條(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等)의 規定에 의한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 ④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화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14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 통지를 받은 會社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第3項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1.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로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로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產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第1項중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을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前段중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을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으로 한다.

第17條第1項중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를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으로 한다.

第18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第16條(是正措置)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確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內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

습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

第24條의2 本文중 “100分の 2”를 “100分の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の 5)”로 한다.

第66條第1項第5號중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를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으로 한다.

第69條의2第1項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의 規定에 위반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로 公示한 者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및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3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出資에 관한 適用特例)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중 企業構造調整을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所有할 수 있는 것은 1998年 1月 1日부터 2001年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所有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同號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날은 이를 2001年 4月 1日로 본다.
- ③ (出資總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있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경우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間은 施行日 현재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金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社會間接資本施設을 위한 出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法律 第5528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法律 第5377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 第2條(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1種施設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立된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者는 인정 당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所有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 ⑤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出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경우로서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第4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株式은 2001年 4月 1日에 이를 취득 또는 所有한 것으로 본다.